지방예산제도 운영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Ⅰ. 재정사업관리(사업구조화)

1. 일반구의 사업구조화

▌질 의▐

□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는 사업을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

▌회 신▐

ㅇ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의 경우 업무가 유사하다면 본청의 정책사업과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가 상이하다면 별도의 정책사업을 설정할 수 있음

2. 인력운영비와 총액인건비의 관계

▌질 의▐

□ 인력운영비와 총액인건비간의 관계는

회 신

○ 총액인건비제도는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구 및 정원 승인권 등이 폐지되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구와 정원을 책정 · 운영하는 제도이며,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됨

○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기존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인건비성 경비가 포함된 총액인건비 항목을 사업구조화 방법에 따라 구조화하게 됨

3. 기본경비의 개념

질 의

□ 기본경비란 무엇인지

회 신

○ 기본경비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통상적인 부서(실과) 운영에 필수 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 운영을 위하여 부서의 인원수 등과 비례하여 산출하는 운영경비임

4. 기본경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의 범위

질 의

□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가 기본경비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사무관리비 통계목 전체가 기본경비로 되는 것인지

회 신

○ 기본경비는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는 않으나 통상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산출하는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전체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경비만 해당됨

○ 따라서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중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면 됨

5. 사업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 범위

질 의

- □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편성목, 통계목, 산출근거까지 모두 작성해야 하는지

회 신

- ○ 사업부서의 예산요구 절차, 방법 등은 종전의 품목예산 체계와 크게 달라지지 않음
- ○ 따라서, 사업부서의 예산요구 또한 당해 자치단체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예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 ○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감안해서라도 편성목–통계목–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1. 투융자심사대상 여부

질 의

- □ 민자사업의 투융자심사의 대상여부와 기관
- □ 국제화센터(영어체험학습기관)를 건립하는데 부지는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받아 매입하였고 건립비 66억은 민자를 유치하여 올해 준공을 할 예정임
- □ 그런데 민간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건립비를 전액 구비로 6년간 균등상환하고 운영도 건립자인 민간업체가 운영을 하고 운영비도 보조해 주기로 함.
- □ 2007년에 30억 이상이라 시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는데 BTL사업으로 심사제외로 통보가 되었음
- □ 당시 투융자심사시자료에는 민자를 유치하고 운영도 민간이 한다고 되어있고 MOU 체결이 안되어 건립비 상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음.

- 이런 경우 건립비를 6년동안 구비로 상환해야 하는데 10억이 넘으므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 심사대상이라면 특별교부세와 6년동안 상환액이 전액 구비이므로 자체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총사업비가 30억이 넘으므로 시심사를 받아야하는지

▌회 신▌

○ 전액 민자(BTL사업)가 아니라 부지는 특별교부세로 매입하여 건축비만 BTL로 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사업임으로 총액개념 기준으로 투자심사 대상 기관을 결정해야 함

2. 투 · 융자심사의 주체

▌질 의▌

□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지원을 하려고 함

□ 재원은 총사업비의 지자체 군비 : 30% 대응투자하여 확보하면 교육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별교부금으로 7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함

□ 이럴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자체심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회 신▌

○ 우선 지역 교육청에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지원 가능할 경우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교육청에서 투 · 융자심사 주체를 판단하여야 하고,

○ 시군 교육청에는 지원할 수 없고, 관할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총액개념 기준으로 투 · 융자심사 주체를 판단함

Ⅲ. 지방채

1. 채무부담행위시 별도의 적용 규정 유무

❙ 질 의 ❙

□ 채무부담행위 시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등 별도의 적용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의회 의결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하는 바,

○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하며, 자치단체별 지방채 총액한도제 범위(외채 제외)내인 경우는 지방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Ⅳ. 예산의 편성

1. 지방세 물납시의 순세계잉여금 처리방법

❙ 질 의 ❙

□ 지방세 일부를 물납(토지)으로 받아 공공청사부지로 사용예정이며, 전년도 결산서에는 물납가액을 계상하였으나 시금고에는 물납금액만큼 차이가 발생,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시 물납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지방세 일부를 물납(토지)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미수지방세를 충당하여야 하나, 물납(토지)을 매각하지 않고 계상하였을 경우 결산 시 미수지방세를 감하고, 토지는 공유재산 증가로 계상하면 됨(당연히 세입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금고에는 물납금액만큼 차이가 발생)

○ 현행 예산은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현금으로 세입처리되지 않고 물납(토지)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시 적용할 수 없음

2. 위 · 수탁금 이자의 반환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사무를 재단법인이 위탁(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탁(수탁)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수탁)금과는 별도로 관리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단법인의 수입으로 귀속시킨 후 사업에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회 신▌

○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의 수행 및 예산의 지원과 집행방법 등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 위탁계약서상의 정산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재무회계규칙 등을 참고하여 재단법인과 해당 자치단체간에 협의하여 처리하기 바람

3. 국가사업 수행 후의 정산절차

▌질 의▌

□ 국비지원 사업이 결산검사 이전에 지출 완료된 경우 추경예산에 잔액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이자발생분의 사용 및 정산은

회 신

○ 국비가 지원된 사업의 경우는 국비지원사업주체인 ㅇㅇ부의 보조금 교부결정조건 및 보조금관리조례를 참고하여 ㅇㅇ부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결산검사 이전에 사업비 지출이 완료되었을 경우 집행잔액에 대하여 결산추경에 국비반납을 위한 예산편성은 가능하며,

○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도 보조시 특별히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목적수행과 관련된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은 가능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도 ㅇㅇ부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4. 예산안 재의요구에 따른 준예산 처리

질 의

□ 2008년도 의회의 예산 의결에 대해 법령위반 및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사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는데 예산의 집행방법은

회 신

○ 지방예산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것으로 재의요구와는 별개로 의회가 의결한 예산은 유효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산에 대한 의회의 재의결 전까지는 당초 확정된 예산이 유효하므로 의결된 예산대로 우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ㅇㅇ역명 변경에 따른 소요경비 지방비 부담

질 의

□ 국유철도인 ○○역이 '95. 3. 1 행정구역변경으로 ○○동에 소재함에 따라 ○○동 주민이 역명변경(○○→○○역)에 대한 민원을 철도청에 제기한 사항으로 철도청에서 역명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전액과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구에서 주관하여야 역명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

회 신

ㅇ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다른 근거가 없이 국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ㅇ 따라서 귀 구에서 질의한 국유철도인 ㅇㅇㅇ역 역명변경에 따른 소용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 처리를 위해 수반되는 경비로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6. 특별회계 청산

질 의

□ 특별회계 청산의 절차는

회 신

ㅇ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했거나, 운영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을 경우 조례의 폐지와 함께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것이며,

ㅇ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여 전출을 할 수 있으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7. 추가로 확보된 재원의 성립전 예산

질 의

□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5억원의 계속사업을 1차년도에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확보하고 자체재원부족으로 2차년도 사업비 3억원중 1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군비부족분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을 경우 2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

▌회 신▐

○ 총사업비 10억원 중 부족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 1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적인 지방비 부담없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교부되었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가 확보된 경우로 성립전 예산사용이 가능함

8.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감액조정 시 처리절차

▌질 의▐

□ 편성된 채무부담행위 상환액 감액조정 시 처리절차는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환하는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액의 증가가 아닌 이미 성립된 채무부담행위액 범위내에서 추경예산에 의한 삭감은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삭감으로 인한 여유재원은 자치단체의 판단으로 편성하면 됨

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1. 사회복지업무수당 지급관련

▌질 의▐

□ 동사무소 생활지원담당에 소속된 행정직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회복지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신

○ 사회복지업무수당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23호에 의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지라도 사회복지업무수당은 지급될 수 없음

2. 시간외근무수당 현업대상자 적용범위

질 의

□ 1일 3교대 근무시 현업대상자 적용범위

회 신

○ 현업대상자 적용범위는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국가공무원의 경우(일반회계) ①도서관의 사서업무담당자 ②항공사, 정비사,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근무자 ④동식물검역 및 종축사양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소방공무원 ⑥병원근무자 ⑦수위근무자

○ 특별회계의 경우 ①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청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병원근무자로 정하고 있음

3. 외국어 통역료 지급

질 의

□ 청내에서 외빈 초청시 통역을 초청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 하였을 경우 통역한 직원에게 통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

- 예를 들어 교육원에서 교육원 직원이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내직원이 출장하여 강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받는데 이 사례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지

회 신

- ○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빈 초청시 통역요원을 지정하고 통역 수행에 따른 통역료를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겠음
- ○ 다만, 통역요원의 지정에 있어 특별한 자격 등 제한이 없으므로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 경우 통역을 담당한 공무원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성, 통역료 이외 다른 명목의 실비보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 통역료 지급시 기준은 통역의 난이도, 통역시간 등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4. 교육강사 수당지급(전임 · 비전임교수)

질 의

□ 공무원교육원 소속 비전임교수 요원에게 교육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지

회 신

- ○ 공무원교육기관에 출강하는 외래강사에 대하여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 또는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자체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2000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65, 111면 참조)
- ○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거나, 특정과목에 대한 교수요원으로 지정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교육 강사에 해당되므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별표9)의 규정에 의거 “교재연구수당”은 지급할 수 있을 것임

5.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예산편성과목

질 의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부터 ○○구에 3억원의 특별부담금 지원요청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협의회 회칙 제2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 부담금 또는 동조 동항 제3호에 의한 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예산편성과목은

회 신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출연할 수 있으며,
○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에 대한 부담금은 우리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17호)에서 일반운영비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 특별 부담금이 우리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 세출예산구분과 설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회칙 등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임

6. 지방공단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여부

질 의

□ 자치구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서는 자치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208호) 위원회 참석수당에서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구청 소속 국장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인사위원회 규정내에 당연직 위원 으로써 공단인사위원회 회의를 참석할 시 수당지급이 가능한 지

회 신

○ 소속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시설관리공단은 소속 자치단체가 아니라면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사료됨

7. 직무대리자의 업무추진비 집행

▌질 의▌

□ 지방자치법 제101조제6항에 의거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리한 경우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기준액 적용방법

▌회 신▌

○ 부시장이 시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부시장은 시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집행할 수 있으나, 시장의 기준액과 부시장의 기준액을 함께 집행할 수는 없음

8. 전별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가능 여부

▌질 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의 퇴직시 전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

▌회 신▌

○ 선거법 등과의 관계로 인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 퇴직공무원에 대한 전별금 지급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9. 선거에 따른 단체장 · 부단체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

▌질 의▌

□ 질의 ① 0.00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단체장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등록시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하고 지급하면 되는 지

질의 ② 부단체장은 현 직책급업무추진비를 계속 지급하면 되는 지

▌회 신▐

■ 질의①에 대하여

ㅇ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동안에는 사실상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일할계산할 수 있을 것임

■ 질의②에 대하여

ㅇ 동 지침에 의하면,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ㅇ 행정안전부에서 기 시달된 지침(자제13130-526호 1999. 8. 26,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관련 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직급별 정액경비는 부단체장 기준액을 적용'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단체장의 기준액을 계속지급 하여야 할 것임

10. 인사이동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방법

▌질 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인사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지

□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 신▐

ㅇ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인사이동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ㅇ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목구분과 설정에 따라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11.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집행

질 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의회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또한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의장, 부의장 - 250만원, 의원 - 180만원)이 정해져 있음.

① 민간인과 의원(1~2명)이 소속된 위원회가 국제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지출을 의회비에서 꼭 지출해야 하는 지(이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대부분 의원 1인당 편성 한도액을 넘어 집행을 거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원이 원할 경우 편성 한도액 초과분은 의원 개인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②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집행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해외출장을 가는 것으로 집행부의 국외여비 지출과목에서 경비를 집행은 가능한 지

- 그렇지 않다면 민간인 해외여비과목에서 집행해도 무방한 지

회 신

○ "행정안전부 운영 13130-920(2000.11.21)호"로 시행된 "지방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에 의거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을 시 · 도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80만원이내, 시 · 군 · 구 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13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동 예산편성 기준액은 각 자치단체 의회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 공무국외여행의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국외여비 최고 상한단가를 의미하는 것일 뿐, 지방의원 의원 전원에 대하여 당연히 편성상한액을 적용하여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원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공무국외여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위 문서대호로 기 통보된 "지방의회의원국외여행규칙(안)"에 정한 바와 같이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거쳐 실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국외여행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규정된 바, 여기서 “공무여행”의 범위는 의회의 회의가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 단체의 연찬회 참석,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장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번 질의 사안처럼 의정활동과 무관한 국제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봄

■ 질의②에 대하여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국외여비는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으며 의회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이유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국내 · 외여비지급기준에 의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공무원여비조례’ 및 ‘공무원여비규정’과는 그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한 것임

○ 지방공무원이 민간인 · 지방의원과 함께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외로 출장하였다면 공무원과 의원, 민간인은 각각 별도의 여비규정에 의해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문제는 의원의 출장목적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 여행”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6에 따른 금액”인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할 수 없으며,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2. 출연금의 특징과 운영방법

❙ 질 의 ❙

□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출연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와 같이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출연금도 적용하는지

회 신

- ㅇ 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출연할수 있을 것임. 이는 출연금을 받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또는 법령에 의거 설립되고 소요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따른 것임
- ㅇ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반드시 신청이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정산의 의무도 없음. 이러한 출연금의 성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필요시 출연의 신청,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출연주체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수 있을 것임
- ㅇ 또한, 출연금은 출자금과 달라서 출연금에 대한 자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경상적인 지원경비의 성격과 가깝다고 하겠음

13.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가능 여부

질 의

- □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인 ○○회 중앙회가 자치단체 관할지역내에 한정된 보조사업을 신청했을 경우 자치단체가 당해 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지

회 신

- ㅇ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으며,
- ㅇ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ㅇ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의 단체(중앙회)라 하더라도 그 단체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은 가능하다 판단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사항임

14. 민영공동주택단지내 복지시설 지원

질 의

□ 민영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인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단지내 도로의 보수 및 테니스장의 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회 신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유재산인 민영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함은 부적절함

15. 교육기관(고등학교이하) 신축, 증축 지원가능 여부

질 의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고등학교 이하)의 신축, 증축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회 신

○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는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사무를 시도사무로 구분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는 동 사무처리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의결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으므로 교육사무는 원칙적으로 교육감의 사무이며, 교육기관(고등학교 이하)의 신축, 증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른 기본적 수요충족을 위한 본질적 교육사무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교육기관(고등학교 이하)의 신축, 증축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16. 예비비 사용 제한

▌질 의▐

□ 예비비 사용관련 제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사용제한으로 업무추진비 및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지방비 의무부담 보조금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쓸 수 없는지

  현재 보육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2006, 2007년에 예비비 등을 확보하여 11 월에 늦게 추가로 내시를 해 줌에 따라 지방비 의무부담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추경도 없고 전용할 예산도 없을 경우 예비비 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또한, 내시금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므로 내시가 없을 경우 추경등에서 반영도 안해주는 등 힘이 듭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예비비사용제한에 보조금이 없던데 지방재정법에만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에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예비비 집행을 제한하고 있는 바, 국비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 부분인 경우에도 보조금인 경우에는 예비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이 · 전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

Ⅵ. 예산의 변경 관리

1. 예산의 이용 방법

▌질 의▐

□ 예산의 이용 방법은

▌회 신▐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 금액 · 이유 등을 명시한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또는 예산총칙편에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음으로써 이용할 수도 있음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간 상호 이용할 예산내역을 통계목까지 작성 요구하고 예산 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2. 예산의 이체 절차

▌질 의▐

□ 예산 이체 절차는

▌회 신▐

○ 이체절차 : 예산이체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 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이체요구 : 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되면, 사업부서는 당해연도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여 세출예산이체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요구
- 이체확정 : 사업부서로부터 세출예산이체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예산 부서는 심의 · 조정후 확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

3. 민간보조사업의 사고이월로 인한 대상자 변동가능 여부

질 의

□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사고이월후 대상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당초 시행지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 변동이 가능한지

회 신

○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출원인행위는 그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등의 장래에 발생될 채권에 대한 지급의 의무를 확정한 행위이므로 사고이월후 사업대상자 변경은 불가함

4. 세입예산의 이체

질 의

□ 세입예산도 이체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세입예산은 장 · 관 · 항 · 목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이체 개념은 아니며 부기별 조직정보를 변경하는 차원임

○ 따라서, 이체 결정 시 세입예산의 이체 결정은 불필요하나 세입예산의 관리와 추경예산 편성 시 기정예산액 등 정보관리를 위해 부기별로 조직정보를 수정 · 변경하여 처리 함

Ⅶ. 기타 지방재정제도

1. 기금 폐지시 민간인이 조성한 금액의 처리방법

▌질 의▐

□ 00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은 초기 기금 조성시 민간인들이 일부분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예산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군의회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권고내용 중에는 예산출연 부분은 세입처리하고, 민간인 조성부분은 해당 단체로 돌려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기금 폐지시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재원은 자치단체 출연, 부담금, 운용수익 등이 있으며, 민간의 출연은 주민성금, 기탁금, 관련단체 기부금 등의 형태가 있음

○ 기금의 폐지는 행정목적을 달성한 경우와 기금운용보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등에 하는 경우가 많음

○ 의회에서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출연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 민간조성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에 돌려주라는 권고가 있었다면

 - ‘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조례’ 폐지시 일반회계 편입금액과 민간조성부분 반납금액을 명기하여 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면 됨

2. 이행연기 특약의 의미 및 이자를 붙일 때 시점

▌질 의▐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에서 정한 이행연기 특약의 의미와 이행연기에 따라 이자를 붙이는 시점은

▌회 신▌

○ 지방채권에 있어 이행연기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함

○ 이 경우 채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자의 당초 조건(일시 또는 분할 등)은 유지하고 이행기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날부터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기금 출연에 관하여

▌질 의▌

□ 1) 자치단체에서는 식품, 환경보전기금등 여러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기금에서 특정한 행정목적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에 출연을 하려고 하는데 기금관리법상 가능한지

2) 또한 기업관련 기금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설립 자본금으로 출연이 가능한지

▌회 신▌

○ 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기금에서 특정한 행정목적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에의 출연이 기금관리법상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1)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금운용 관련 사항 중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출연금을 받는 재단법인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방기금법령 등에서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확보와 사업의 탄력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 법인 등에 출연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설치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기업관련 기금에서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설립된 지방공사에 설립 자본금으로 출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출연의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내용은 상기와 같음

Ⅷ. 지방예산 용어 해설

가산세(加算稅)

과세권자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를 말함. 즉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됨

지방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 지방세(예 :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정당세액에 미달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미신고납부 및 정당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행정벌적 성질로 부과하는 세금의 일종임

감자(減資, capital reduction)

일단 납입되어 확정된 자본은 감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의 감소를 행할 수 있는데, 이를 감자(感資)라 함

공공용 재산(公共用 財産)

공공용재산 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공원, 운하, 터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사회간접자본 자산을 말함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청사, 기숙사 등을 의미함

국세(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의 수입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 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과태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함

균형재정(均衡財政)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빚을 내지 않고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만으로 꾸려가는 것임. 거둔 세금보다 쓴 돈이 더 많으면 적자재정이라고 함

대체수지(對替收支)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간 또는 세입·세출간의 자금수지에 관하여 현금의 접수를 요하지 않고 다만 금고 내부에서의 이환(移換)만을 목적으로 금고로 하여금 그 내부에서 대체정리 하는 것을 말함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채무를 얻는 경우 자치단체가 지불보증을 하여 재원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

그러나 보증을 받은 자가 채무액을 약정한 기한내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한 자치단체가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가 직접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와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보증채무행위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에 보증에 앞서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과 보증채무의 관리상황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보증채무행위가 신중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음

운영사례는 지방 공사·공단의 장비 등 외상구입시 지불보증, 주택건설에 있어 은행 요구에 의거 주택융자금 기채, 투·융자사업에 있어 주민이 부담금을 차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보증, 지역내 중소기업의 차입보증, 영세서민 주택자금 차입보증 등이 있음

성과관리(成果管理)

성과관리란 목표와 사업별 추진계획을 설계하고, 사업집행 이후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들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점검·평가하여, 획득한 성과정보를 조직·인사·예산 등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에 성과관리의 정의는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하고 있음

참고로, 국가재정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재정사업 성과계획 : 기관이 달성하고자 하는 향후 1년간의 재정사업의 성과에 대한 계획
- 재정사업 성과보고서 :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는 보고서
- 재정사업 자율평가 : 사업의 계획, 집행체계, 성과달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활동과 성과를 사업 주체가 자체적으로 평가
- 재정사업 심층평가 : 해당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사업을 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관리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성과관리 전략계획 :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 과제별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 과제별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

예금부분보장제도(預金部分保障制度)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의 일정부분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지급범위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2,000만원(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하여 왔으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전액을 보호하는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실시한 뒤 2001년 1월 1일부터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재실시(자치단체도 해당)하고 있음

한편, 투자신탁회사와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축협의 단위조합, 파이낸스사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금융상품 중에서도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이나 종합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예산의 사전의결 원칙(豫算의 事前議決 原則)

예산은 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의 견적이므로 회계연도 이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예산의 집행으로 준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예산통일의 원칙(豫算統一의 原則)

예산은 일괄된 질서와 계통적으로 종합 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자치단체 예산은 사회경제의 성장발전에 따라 규모가 확대되고 영역의 다양화 및 내용이 복잡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치단체 각자의 주관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경우 재정관리의 혼란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예산과목구분을 통일하고, 예산안의 내용과 편성서식 및 첨부서류를 정형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점증주의(漸增主義)

품목별 예산제도에 기초한 예산편성기법을 말함

예산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사용된 일련의 관행을 특징적으로 나타낸 개념으로 예산편성과 사정에 있어 전년대비 일정액 또는 일정률을 인상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예산진행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운영해 오고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지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도임. 정부간 재원이전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재정자원을 재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원규모를 바꾸고 지여주민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부간 재정이전제도를 지방재정조정제도라 할 수 있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은 지방의 일반재정에 이전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있음

지방교부세는 정부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원보장을 위해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방정부에게 무조건부로 교부하는 제도임.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20%)와 교육세 등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제도임

차등보조율(差等補助率)

국고보조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율보조율제도를 말함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자등보조율을 적용할수 있음.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총계예산주의(總計豫算主義)

회계연도내에 있어서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총계예산주의에서는 순계예산주의와는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음.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총액배분 · 자율편성(總額配分 · 自律編成, 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되면,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말함

총 재정규모를 확정한 다음 분야별·부처별 재원배분 규모를 할당하고, 각 부처는 할당액의 범위안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항목을 자율적으로 편성함

국가재정법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처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하여 각 부처에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부처별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음

통합지출관(統合支出官)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복식부기의 통합재무제표 산출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기 위한 통합지출관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현재까지 아직 운영되는 자치단체는 없음)

환매조건부채권(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agreement)

한국은행의 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시중은행 및 증권사가 보유한 국공채범위 내에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환수·매입하는 금융상품

- 취급기관 : 시중은행, 증권사
- 예치기간 : 91일, 120일, 180일, 270일
- 이자지급 : 후이자, 확정금리
- 특 성 : 수시인출불가, 중도환매시 수익률 감소